

의안  
번호

272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04. 17.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72호

다. 제출일자 : 2024. 04. 00.

라. 회부일자 : 2024. 04. 00.

###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유 형	정 원	개 소	비 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성북구 보문사길18, 4층 (보문동)	470㎡	융합형	40명	2024.7	신규 설치

####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성북13호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성북13호점이 2024년 7월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정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설치비는 다음과 같음.

#### < 대상시설 >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시기 (예정)	소유자	비고
융합형	보문사길 18, 4층 (보문동)	470㎡	40명	4명	' 24.07. (예정)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신규 설치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4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市→區, 2023.11.30.)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3호점 설치비>

(단위 : 천원)

시설비 합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설계비 시
	소계	국	시	구	소계	국	시	
397,740	322,740	30,000	257,740	35,000	50,000	40,000	10,000	22,000

※ 위탁 운영비: 343,209천원(국 43,171 시 183,503 구 116,534)

- 인건비: 201,525천원
- 운영비: 34,164천원
- 급식비: 107,520천원

## 다. 민간위탁 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sup>1)</sup>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sup>2)</sup>제1항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sup>3)</sup>에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33~34페이지)의 위탁기준 및 선정 방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유자인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과 2021년 6월,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바, 키움센터 성북13호점의 지정위탁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

- 
-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소	면적 (㎡)	정원 /현원	개소일	위탁운영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센터 3층	110	29/29	19.01.0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호점 융합형	김정미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35	20.12.2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3호점	장현옥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21.03.01.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5호점	양재연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21.10.01.	사단법인 해피피플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0	21.10.0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송인로 50, 114동 1층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26	21.03.01.	
9호점	김정윤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90	23/23	21.03.01.	사단법인 해피피플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30	21.09.01.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11호점	김지윤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30	22.07.0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12호점	안은숙	길음1동	삼양로9길 14-7, 2~3층 길음소리마을센터	196	30/30	23.12.18.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 화교육협회
시립 거점형	최명숙	종암동	회기로3길 17, 2~5층	1,170	-	22.10.01	사단법인 동행연우회